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 현황 및 신청조건

국가	신청 기간	신청 조건
한국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 이내	조건 없음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자는 수입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통관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자는 수입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자는 납부해야할 관세 및 세금의 12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요구 받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자는 수입시 수입신고서에 요청내용을 기재하여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미얀마	소급 기간 없음	수입 통관 시에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필리핀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수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가 아직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물품의 반출을 위해서는 MFN 세율과 한-아세안 FTA세율간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사후보증채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 후 6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다면 담보를 환급받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 앞으로 귀속된다.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자는 수입허가 신고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그럴 경우, 관세가 수입자에게 환급된다.
태국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	수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베트남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코로나 기간 동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